서울특별시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

2109

2024년 9월 11일 보건복지위원회

I. 심사경과

1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4년 8월 12일 서울특별시장

2. 회부일자 : 2024년 8월 14일

3. 상정일자 : 제326회 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

【2024년 9월 6일 상정 · 의결(원안 가결)】

Ⅱ. 제안설명의 요지 (시민건강국장)

1. 제안이유

- 가. 서울시자살예방센터는 서울시민의 자살예방을 위한 시민 참여기 반 통합적 생명돌봄체계 구축으로 모두가 더불어 생명을 돌보 기 위해 전문기관에서 위탁운영 중으로 '24년 12월까지 재계 약 만료 예정으로.
- 나. 이태원 참사 등과 같은 자살 고위험군요인 변화 등으로 자살예 방정책 변화와 같은 외부 환경변화에 유기적 대처를 위해 전문 성과 노하우를 겸비한 기관에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하여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제4조의3(의회동의 및 보고)제1항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(재위탁)

2. 주요내용

가. 위탁사무명 : 서울특별시자살예방센터 운영

나. 추진근거

- ○「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」11조
- ○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제4조 ①항 3호

다. 민간위탁 필요성

- 코로나 이후 '23년부터 자살률 증가추세(국가자살동향시스템)로 자살 관련 전문가에 의한 대학, 유관기관 등과 범사회적인 자살 네트워크 자살예방 사업 추진 필요
- 이태원 참사 등과 같은 자살고위험군요인 변화 등으로 자살예방 정책 변화와 같은 외부 환경변화에 유기적 대처가 가능
- 근거기반 자살예방사업 추진을 위한 자살통계 구축과 자치구 특성 자살분석지원, 자살업무 담당 실무자 역량 강화 등 자치구 특성에 맞는 자살예방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 가능

라. 위탁유형 : 시설위탁

- 소 재 지 :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2길 30 15층
- 시설규모 : 면적 1,625.34m²(15층), 보증금 422,836,200원

마. 위탁기간 : 3년(2025.1.1.~2027.12.31.)

바. 위탁사무

- 자치구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 사업 기술 지원
- 24시간 상담전화 운영
- 자살예방 매뉴얼 개발 및 보급
- 자살예방 전문인력 및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 교육
- 생애주기별 등을 반영한 자살예방 계획 수립 및 근거기반 자살예방사업
- 자살유족에 대한 상담 등 지원서비스

- 자살예방에 대한 연구 지원 및 자살수단에 대한 통계
-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·연계, 사후관리
-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인식개선 사업
- 그 밖에 이 사업과 관련하여 "시"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

사. 그간 위탁내용

선정방법	위탁기간	수탁기관
- 최초위탁 등	3년('16.3.1 ~ '19.2.28)	성공회대학교 산학협력단
- 재위탁(공모)	3년('19.3.1 ~ '21.12.31)	의료법인 명지의료재단 명지병원
- 재계약	3년('22.1.1 ~ '24.12.31)	의료법인 명지의료재단 명지병원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○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(자살예방법) 제4조, 제 13조(자살예방센터 설치) ①항

[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(약칭: 자살예방법)]

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

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위험자를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야 한다.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의 사전예방, 자살 발생 위기에 대한 대응 및 자살이 발생한 후 또는 자살이 미수에 그친 후 사후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

제13조(자살예방센터의 설치)

-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)은 자살예방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- 1. 자살 관련 상담
- 2. 자살위기 상시현장출동 및 대응
- 3. 자살시도자 사후관리
- 4. 자살자의 유족 지원 및 관리
- 5.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
- 6. 자살예방 관련 종사인력에 대한 교육 · 훈련
- 7.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자살자의 유족 지원을 위하여 <u>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</u> 업무.

○ 자살예방법 시행령 제8조(자살예방센터 설치·운영의 위탁)

[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(약칭: 자살예방법 시행령)]

제8조(자살예방센터 설치·운영의 위탁) ① 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자살예방센터의 설치·운영을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- 1.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3조 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 시설
- 2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
- 3. 「사회복지사업법」제16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
- 4. 그 밖에 자살예방에 관한 전문 인력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및 단체
 -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 (자살예방센터의 설치·운영 등) ①항

[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]

제13조(자살예방센터 설치·운영 등)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은 자살예방센터를 설치 · 운영할 수 있다.

- 1. 자살예방을 위한 24시간 상담
- 2. 자살위기 상시현장출동 및 대응
- 3. 자살시도자 사후관리
- 4.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
- 5.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
- 6. 자살자의 가족에 대한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
- 7. 그 밖에 자살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
 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

[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]

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노인 · 장애인 · 여성 · 청소년 · 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- 2.환경기초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- 3.문화 · 체육 · 관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- 4.공원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- 5.시립병원,보건 · 건강증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- 6.산업지원,직업훈련,교통 관련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- 7.공무원 후생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
- 8.영어마을 운영에 관한 사무
- 9.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

○ '24년 서울시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별도 제출

※ 작성자 : 시민건강국 정신건강과 김정순 (☎2133-7547)

Ⅲ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주병준)

1 동의(안)의 제출 경위

- '서울특별시 자살예방센터' '재위탁 동의안'은 기존 제3차 '재계약'을 통해 협약이 연장된 수탁기관(의료법인 명지의료재단 명지병원)과의 민간위탁 협약기간(3년) 만료 시기가 '24년 12월 말로 도래 예정임에 따라.
 - ※ 3차 협약 재계약: '22.1.1. ~ '24.12.31. (3년)
- **지난 '24**. 5월 말 경 제324회 정례회에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(이하 "민간위탁 조례")」 제4조의3(의회동의 및 보고)에 근거하여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으로 제출되었음.
- 그러나, 지난 제324회 보건복지위원회 시민건강국 의안 심의 과정에서, 시민 건강국 정신건강과는 「민간위탁 조례」 제4조의4제8호 및 「서울특별시의회 회 의규칙」 제18조에 근거하여, '민간위탁 동의안 시의회 제출 마감 시점('24. 5. 27.)까지' 필수적으로 완료해야 할 '사전절차'인 '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 회 심의 및 의결'을 완료하지 못하였음.

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

제4조의4(민간위탁 동의안) 시장이 제4조의3에 따라 '제출'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 8.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

제5조(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)

-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2. 제4조의2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에 관한 사항
- ⑥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「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」

제18조(의안의 발의 또는 제출)

-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의원이 발의하거나 시장、교육감、위원회가 제출한다.
- ③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회기시작 1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- 즉, 집행기관은 '동의안' 제출 마감 시점('24. 5. 27.)까지 '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'가 심의 및 의결한 '심의 결과'를 동의안 첨부 서류로 제출하지 못하였음. 그리고 이에 본 동의안은 심사 보류 되었음.
 - ※ 실제 동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'운영평가위원회 심의 및 의결'은 제324회 시의회 의안 제출 마감 시점인 '24. 5. 27. 을 지나 '24. 5. 29.(24년 제4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)에 이루어졌음.

〈출처: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p. 44 참조〉

시의회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이 수정의결된 경우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여부

- <mark>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</mark>는 시 주관부서에서 시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기 전에 대상사무의 민간위탁 적정성 여부 등을 시 행정부 차원에서 최종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필수적인 사전절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
- 그리고 이에 동 '서울특별시 자살예방센터' 재위탁 동의안은 '24년 5.
 29.에 개최된 '24년 제 4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'의 심의결과
 (적정 권고)와 함께 이번 제326회 임시회에 다시 한번 제출되었음.

2 민간위탁 추진경위 및 개요

○ 기존 민간위탁 추진 경위

선정방법	위탁기간	수탁기관
- 최초위탁 등		성공회대학교 산학협력단
- 재위탁(공모)		의료법인 명지의료재단 명지병원
- 재계약	3년('22.1.1 ~ '24.12.31)	의료법인 명지의료재단 명지병원

○ 민간위탁 개요

- 사 무 명 :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관리 및 운영

- 위탁유형 : 시설형

- 구 분 : 재위탁 (공모)

- 위탁기간 (예정) : 3년 ('25.1.1. ~ '27.12.31.)

- 소요예산 ('24년 기준) : 2,737,525천원 (민간위탁금)

※ '24년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관련 총 예산은 약 45억 (시비:약 38억, 국비 약 7억)

- 시비 총 약 38억 = 민간위탁금 약 27억 + 부동산 임차료 약 4억

+ 국시비 매칭분 약 7억

연 도	예산과목	세부 내역	
2024년	서울시자살예방센터 운영 (민간위탁금)	○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운영 - 인건비 - 운영비 - 사업비	= 2,737,525천원 = 1,735,629천원 = 391,360천원 = 610,536천원

- 근무인력 ('24. 4월기준): 현원 51명 (정원 59명)

○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: **적정 (권고)**

부서명	위탁사무명	유 형	수탁기관	위탁 기간	심의 결과
시민건강국	서울시 자살예방센터	시설형	공모	3년 이내	적정
(정신건강과)	관리 및 운영	(재위탁)	예정		(권고)

- '서울특별시 자살예방센터'의 주요 사업 목적은 범사회적 '자살 예방' 환경 및 민·관 협력 인프라를 조성함과 동시에 자살취약계층 등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맞춤형 '자살 예방'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임. 그리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서울시 자살률 감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.
- 그리고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동 센터는 다음과 같은 세부 사업을 위탁 추진 중에 있음. 그리고 이러한 세부 사업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, 동 기관은 '자살예방사업' 관련 '직접수행기관'의 성격과 '지원기관'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.
 - 즉, 동 기관은 '24시간 상담전화운영, 자살유족 등에 대한 상담지원 서비스 제공' '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 발견·연계·사후관리' 등의 '사업'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사업의 '직접 수행 기관'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.
 - 아울러, '자치구에 대한 자살예방 사업 기술지원', '자살예방 매뉴얼 개발 및 보급', '자살예방 관련 연구지원 및 통계 작성', '자살예방 전문인력 교육', '생애주기별 및 근거기반 자살예방사업 계획 수립' 등을 살펴볼 때 '지원기관'으로서의 성격도 함께 가지고 있다고 판단됨.
- 자치구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 사업 기술 지원
- 24시간 상담전화 운영
- 자살예방 매뉴얼 개발 및 보급
- 자살예방 전문인력 및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 교육
- 생애주기별 등을 반영한 자살예방 계획 수립 및 근거기반 자살예방사업

- 자살유족에 대한 상담 등 지원서비스
- 자살예방에 대한 연구 지원 및 자살수단에 대한 통계
-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**발견·연계, 사후관리**
-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인식개선 사업
- 그 밖에 이 사업과 관련하여 "시"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
- 따라서, 동 사무는 「민간위탁 조례」 제4조에 따른 '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'에 해당한다고 사료됨. 그리고 특히, '정신건강 관련 전문 지식 과 전문적인 상담 역량'이 반드시 필요한 사무라 판단됨.

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

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- 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- 이에 더해, 보건복지부의 「2023 자살에 대한 국민인식조사」에 따르면, '자살 생각'의 주된 이유가 '경제적인 어려움'(44.8%), '가정 생활의 어려움'(42.2%), '정서적 어려움'(19.2%)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,

〈출처: 2023 자살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- 보건복지부〉



- '정신건강' 관련 전문성 뿐만 아니라 '사회·경제적' 어려움을 상담하고 유관 기관과 연계해줄 수 있는 '사회복지' 관련 '전문성' 역시 필요 한 사무라 판단됨.
- 그리고 동 사무는 법적으로도 「자살예방법」제13조제3항 및 「자살예방법 법 시행령」제8조제1항에 근거하여 법령상 서울특별시장(시·도지사)가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라 판단됨.

자살예방법제13조 (자살예방센터의 설치)

-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)은 자살예방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(이하 "생략")
-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.

자살예방법 시행령 제8조 (자살예방센터 설치 • 운영의 위탁)

-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<u>자살예방센터의 설치·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 기관 및 단체</u>에 위탁할 수 있다.
 - 1.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 증진시설
 - 2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
 - 3.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
 - 4. 그 밖에 자살예방에 관한 전문 인력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및 단체
 - 따라서, 동 '서울특별시 자살예방센터 운영' 사무는 우선, '정신건강, 사회복지, 전문상담' 관련 '전문지식'을 필요로 하는 사무라는 점에서 '사무'의 '민간위탁' '필요성'이 충분하다고 사료됨. 아울러, 관련법령인 「자살예방법령」에 명시적으로 동 사무를 '민간'에 '위탁'을할 근거가 존재함에 따라 '법적'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사료됨.

- 다만, 이러한 동 '서울특별시 자살예방센터 운영' 사무의 '민간위탁 필요성' 및 '법적근거 존재여부'와는 별개로 지금까지 '동 센터'가 총투입한 예산 ('24년 기준 시비 약 38억원) 대비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운영이 되었는지 심도 있는 점검이 필요하다고 사료됨.
 - ※ '24년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관련 총 예산은 약 45억 (시비:약 38억, 국비 약 7억)
 시비 총 약 38억 = 민간위탁금 약 27억 + 부동산 임차료 약 4억 + 국시비 매칭분 약 7억
- 첫째, 동 사무에 대한 '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' 점수는 70.33점으로서, 서울특별시 민간위탁 관리지침 상 필요적 재계약 배제 사유인 75점1) 미만에 해당함.
- 그리고 이는 실제 '재계약'을 추진하거나 추진 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관계 없이, 기존 민간위탁 사무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있어 주요한 기준 점수가 되는 75점을 넘지 못한 것으로서, 향후 업무 추진에 있어 적극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사료됨.
 - ※ 현재 동 사무의 수탁기관은 '19년에 공모를 통해 사무를 위탁 받은 후, '22년에 '재계 약'을 통해 위탁기간을 1회 연장 하였음. 이에 동 사무는 '종합성과평가'가 '75점 미만' 인 것과 상관없이 필요적으로 '재위탁 공모'를 통해 추진해야함. 왜나하면, 기존 수탁 기관과의 재계약은 「민간위탁」 조례제12조제3항에 따라 단1회만 가능 하기 때문임.
- 둘째, 동 사무에 대한 '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'의 심의 및 의결 결과는 '적정 권고'이었으며, 위원회의 주요 권고 사항은 다음과 같음.
- ▶ **종합성과평가 지적 사항** 개선계획 수립
- ▶ 상담사 소진 예방을 위한 적극적 조치 필요
- ▶ 시설 이전 등 **임차료 경감방안** 검토 (※ '24년 기준 임차료 연 4억원)
- ▶ 4/4분기에 집중된 예산 집행 계획 조정

¹⁾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(p58)에 따르면, '**종합성과평가'결과가 75점 미만인 경우는 필요적으로** '재계약'이 배제됨. 따라서, 평가점수 75점은 '실제 재계약 추진 여부와 상관없이' 기존 '민간위탁기관'의 성과를 평가하는 데 있어 주요한 '기준 점수'가 됨.

- 따라서, 향후 재위탁을 통해 '수탁기관'을 공모할 때, 앞서 언급한 '권 고 사항'을 '공모' '신청기관'이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 한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됨.
- 셋째, 동 센터는 과거 '23. 1월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'감사(총9건)' 및 '23년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'행정사무감사'에서 센터의 '인사·계약·재무·회계' 관련 전반적인 '운영 미흡'으로 많은 지적을 받은 바 있음. 그리고 이러한 점이 앞서 언급한 '종합성과평가'에도 '감점' 요소로 아울러 작용하였음. 따라서, '자살예방사업'이라는 '고유사업' 뿐만 아니라 동 사업을 뒷받침 하는 데 필수적인, 동 센터의 전반적인 행정적 '운영'에 대해서도 향후 보완이 필요하다고 사료됨.
- 마지막으로, 그동안 동 센터의 주요 업무 中 <u>'24시간 상담 전화'</u>에 대한 '<u>상담 연결 어려움' 즉, '응답률 저조' 민원이 꾸준히 제기</u>된 바 있는데.
- 그 주된 원인은 '야간 상담 업무'와 '야간 위기 출동 업무'를 수행 하는 인력이 분리되지 않아, 해당 인력이 '야간에 출동' 시 '상담 인력'이 연동되어 부족해지기 때문임.
- 그리고 이에 따라, '상담 직원'들의 업무 과부하 등으로 인한 갈등 및 이직도 발생하였던 것으로 파악됨. 따라서, 향후 공모 시 '동 상 담 업무'를 포함하여 센터의 전반적인 '조직 및 업무 관련 재진단' 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.
 - (세계일보) 상담 전화 연결도 힘든 '서울시 자살예방센터' (24.7.17.)

Ⅳ. 질의 및 답변요지: 「생략」

V. 토론요지: 「없음」

Ⅵ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

Ⅷ. 소수의견 요지 : 「없음」

Ⅷ. 기타 필요한 사항:「없음」

서울특별시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

의 안 번 호 2109

제출년월일: 2024년 8월 12일 제 출 자: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서울시자살예방센터는 서울시민의 자살예방을 위한 시민 참여 기반 통합적 생명돌봄체계 구축으로 모두가 더불어 생명을 돌보기 위해 전문기관에서 위탁운영 중으로 '24년 12월까지 재계약 만료 예정으로,
- 나. 이태원 참사 등과 같은 자살 고위험군요인 변화 등으로 자살 예방정책 변화와 같은 외부 환경변화에 유기적 대처를 위해 전문성과 노하우를 겸비한 기관에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하여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제4조의3(의회동의 및 보고)제1항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함(재위탁)

2. 주요내용

가. 위탁사무명 : 서울특별시자살예방센터 운영

나. 추진근거

- ○「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」11조
- ○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제4조 ①항 3호

다. 민간위탁 필요성

○ 코로나 이후 '23년부터 자살률 증가추세(국가자살동향시스템)로 자살 관련 전문가에 의한 대학, 유관기관 등과 범사회적인 자살 네트워크 자살예방 사업 추진 필요

- 이태원 참사 등과 같은 자살고위험군요인 변화 등으로 자살예방 정책 변화와 같은 외부 환경변화에 유기적 대처가 가능
- 근거기반 자살예방사업 추진을 위한 자살통계 구축과 자치구 특성 자살분석지원, 자살업무 담당 실무자 역량 강화 등 자치구 특성에 맞는 자살예방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 가능

라. 위탁유형 : 시설위탁

○ 소 재 지 :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2길 30 15층

○ 시설규모 : 면적 1,625.34m²(15층), 보증금 422,836,200원

마. 위탁기간 : 3년(2025.1.1.~2027.12.31.)

바. 위탁사무

- 자치구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 사업 기술 지원
- 24시간 상담전화 운영
- 자살예방 매뉴얼 개발 및 보급
- 자살예방 전문인력 및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 교육
- 생애주기별 등을 반영한 자살예방 계획 수립 및 근거기반 자살예방사업
- 자살유족에 대한 상담 등 지원서비스
- 자살예방에 대한 연구 지원 및 자살수단에 대한 통계
-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·연계. 사후관리
-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인식개선 사업
- 그 밖에 이 사업과 관련하여 "시"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

사. 그간 위탁내용

선정방법	위탁기간	수탁기관
- 최초위탁 등	3년('16.3.1 ~ '19.2.28)	성공회대학교 산학협력단
- 재위탁(공모)	3년('19.3.1 ~ '21.12.31)	의료법인 명지의료재단 명지병원
- 재계약	3년('22.1.1 ~ '24.12.31)	의료법인 명지의료재단 명지병원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○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(자살예방법) 제4조, 제13조(자살예방센터 설치) ①항

[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(약칭: 자살예방법)]

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위험자를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.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의 사전예방, 자살 발생 위기에 대한 대응 및 자살이 발생한 후 또는 자살이 미수에 그친 후 사후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

제13조(자살예방센터의 설치)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 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)은 자살예방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- 1. 자살 관련 상담
- 2. 자살위기 상시현장출동 및 대응
- 3. 자살시도자 사후관리
- 4. 자살자의 유족 지원 및 관리
- 5.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
- 6. 자살예방 관련 종사인력에 대한 교육 훈련
- 7.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자살자의 유족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.
- 자살예방법 시행령 제8조(자살예방센터 설치·운영의 위탁)

[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(약칭: 자살예방법 시행령)]

- 제8조(자살예방센터 설치·운영의 위탁) ① 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 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자살예방센터의 설치·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- 1.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 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 시설
- 2. <u>「고등교육법」</u> 제2조에 따른 학교
- 3.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16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
- 4. 그 밖에 자살예방에 관한 전문 인력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및 단체
 -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 (자살예방센터의 설치·운영 등) ①항

[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]

- 제13조(자살예방센터 설치·운영 등)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은 자살예방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- 1. 자살예방을 위한 24시간 상담
- 2. 자살위기 상시현장출동 및 대응
- 3. 자살시도자 사후관리

- 4.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
- 5.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
- 6. 자살자의 가족에 대한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
- 7. 그 밖에 자살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

○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

[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]

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노인 · 장애인 · 여성 · 청소년 · 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- 2.환경기초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- 3.문화ㆍ체육ㆍ관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- 4.공원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- 5.시립병원,보건 · 건강증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- 6.산업지원,직업훈련,교통 관련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- 7.공무원 후생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
- 8.영어마을 운영에 관한 사무
- 9.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

○ '24년 서울시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별도 제출

※ 작성자 : 시민건강국 정신건강과 김정순 (☎2133-7547)